



TaxNewsFlash - Transfer Pricing

[Website](#) | [Archive](#) | [Contact](#)

Transfer Pricing Newsletter

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(TP)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.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[Thirty Jurisdictions Activate Global Tax Report Exchange Mechanism \(Bloomberg TP Report vol. 26, no. 2 pg. 99\)](#)

글로벌 조세정보 교환체계의 활성화

OECD(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)에서 발표한 BEPS 프로젝트 Action Plan 13 의 국가별보고서 지침에 따라 프로젝트 참여국들은 국가별보고서의 국가간 교환을 위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.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수익, 고용자 수, 기납부세액 등의 주요 조세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.

현재까지 57 개국이 OECD 의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(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ountry-by-Country Reports, 이하 "MCAA")에 서명하였습니다. MCAA 에 서명한 국가는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고자 하는 타방국가를 OECD 에 통보해야 하며 현재 30 개국 이상이 통보를 마쳤습니다.

미국의 경우는 MCAA 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일련의 양자간 조세정보 교환협약을 통해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OECD 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

한편 EU 회원국의 경우 Council Directive 2016/881/EU 에 따라 국가별보고서가 EU 국가간 자동적으로 교환되도록 하였습니다.

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

13 June 2017

KEY CONTACTS

[강길원 전무이사\(본부장\)](#)

(Tel: 02-2112-0907)

[김상훈 상무이사](#)

(Tel: 02-2112-7939)

[백승목 상무이사](#)

(Tel: 02-2112-0982)

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MCAA 를 통해 국가별보고서를 자동교환 할 타방국가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양자간 조세정보 교환협약에 따라 특정 국가와 국가별보고서를 자동 교환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.

미국 과세당국(Internal Revenue Service, 이하 "IRS")은 최근 네덜란드와 첫 자동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였으며, 약 100 건의 자동정보교환협정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.

현재 기준으로 자동정보교환 협정의 전체 목록은 OECD 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정보는 다국적 그룹 및 과세당국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.

India: Export commission paid to related party not a royalty; transfer pricing adjustment rejected

인도: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수출수수료는 로열티로 볼 수 없음

인도 델리 고등 법원(The Delhi High Court)은 로열티 및 수출수수료에 대한 두 가지 독립된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일본 소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수출수수료를 로열티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.

참고: CIT v. Hero Motocorp Ltd. (ITA 923/2015) (Delhi High Court)

납세자 A 법인은 일본 소재 특수관계자로부터 기술을 허여 받아 오토바이를 제조 및 판매하는 인도 소재 법인입니다. A 법인은 일본 소재 특수관계자와 기술허여 및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동 계약 하에 제품 제조, 조립 및 서비스는 물론 공장 설립 계획 및 설계를 위한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였습니다.

또한 이와는 별도로 수출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동 계약 하에 A 법인은 일본 소재 특수관계자로부터 특정 시장에서 특정 제품모델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 받고 그 대가로 FOB 가격의 5%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.

이전가격 조사관은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방법(이하 "CUP")를 통해 해당 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으며 해당 수수료의 정상가격은 "0"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A 법인이 얻는 경제적 효익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"불필요(Unnecessary)"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 이에 따라 약 INR 121,900,000(약 2,118 백만원)이 이전가격조정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.

A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득세 항소심 법원(Income Tax Appellate Tribunal)에 항소하였습니다. 동 법원에서는 A 법인이 얻는 효익의 실질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수수료가 로열티는 물론 기술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A 법인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

이에 불복하여 과세당국은 수출 계약이 A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가져가도록 고안되었다는 근거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.

고등법원은 A 법인이 특정지역에서의 수출을 허가 받음으로써 기존의 현지 유통 및 판매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 발생 없이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어 들었으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이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A 법인의 수출 수수료 지급이 로열티 혹은 기술 서비스에 대한 대가 성격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였습니다.

[Italy, Google End 14-Year Tax Dispute With \\$335M Settlement \(Bloomberg TP Report vol. 26, no. 2 pg. 85\)](#)

이탈리아: 구글 3억600만 유로(약 3,800억 원)의 세금 납부에 합의

Google Inc. (이하 “구글”)은 이탈리아 과세당국에 3 억 600 만 유로(약 3,800 억 원)의 세금을 내기로 합의하면서 2002 과세연도부터 2015 과세연도를 아우르는 조세 논쟁의 막을 내렸습니다.

해당 금액은 2015 년 12 월 이탈리아 과세당국이 Apple Inc. 와 합의한 3 억 1800 만 유로(약 4,000 억 원)에 미치지 못 하며, 동 금액은 여전히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큰 합의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.

구글은 이탈리아에서 거두어들인 수익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소재한 법인의 매출로 잡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. 이탈리아의 법인세율은 2017 년 27.5%에서 24%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유럽연합(European Union) 내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입니다.

이번 합의는 구글이 이탈리아 소재 고정사업장으로서 이탈리아 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한 것으로 구글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

[Back to top](#)

Hungary to Adopt Country-by-Country Reporting

헝가리: 국가별보고서 규정 도입

헝가리 의회는 지난 5 월에 조세 및 기타 부담금 분야의 국제 행정 협력에 관한 법률(the Act on Certain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Field of Taxes and Other Charges)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7 년 5 월 31 일을 기준으로 발효되었습니다. 헝가리는 MCAA 에 서명하였으므로 동 개정안을 통해 국내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별보고서의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헝가리는 직전 사업연도 그룹 연결 매출액 EUR 750 백만(약 9,500 억 원)인 다국적 기업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합니다. 과세당국간에 자동정보교환이 이루어지므로 그룹의 최종 모회사 혹은 모회사를 대리하는 자회사가 그룹을 대표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합니다. 그러나 대표 제출자를 제외한 그룹 내 다른 법인들도 국가별보고서를 대표로 제출하는 법인의 상호와 세무상 소재국을 헝가리 과세당국에 통지(notification)해야 합니다. Notification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입니다. 다만 첫 대상 사업연도인 2016.01.01 혹은 그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 개월 이내에 notification 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Notification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는 과세당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따르고 전자적(Electronic)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양식은 아직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.

국가별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한 경우,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정보를 포함한 경우, notification 을 하지 않는 경우 최대 HUF 20 백만(약 8 천만 원)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
[Back to top](#)

[Privacy](#) | [Legal](#)

INTERNAL USE ONLY

27th Floor, Gangnam Finance Center, 152, Teheran-ro, Gangnam-gu, Seoul, Korea

© 2017 Samjong KPMG ERI Inc.,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("KPMG International"), a Swiss entity. All rights reserved.

kpmg.com/socialmedia



kpmg.com/app

